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월 일 (제334회)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인수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일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일

발 의 자 : 김인수·이양섭·김학철·박우양·
이의영·황규철·김봉희 의원(7명)

1. 제안 이유

-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조)
- 나.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조번호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3조 ~ 제7조(생략) 제7조의1(실적보고서 제출) ① (생략)	제3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실적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경제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